

# 일본 ‘오지야치지미·에치고쥬후(小千谷縮·越後上布)’ 의 사례를 통해 본 전통 직물공예의 지속 가능성

이채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투고일자 : 2012. 09. 28 · 심사일자 : 2012. 11. 01 · 게재확정일자 : 2012. 11. 15

## 국문초록

전통 직물공예는 소재한 지역의 역사와 환경,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전승되어 왔다.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지역적 대표성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산업으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전통 직물공예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보호조치가 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통’에 대한 보전으로, 이는 전통 직물공예를 만드는 제작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문화재 지정은 급속히 변화되는 전통 직물공예의 환경 변화에 있어서 해당 기술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보호조치로서 기능하였다.

그렇지만 전통 직물공예는 문화재이기 이전에 지역산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왔다. 이 같은 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호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예기술의 특성상 제조기술과 재료, 도구의 발달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맞춰 ‘전통’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일본 오지야치지미·에치고쥬후의 사례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전통 직물공예가 문화재 지정과 전통 공예산업으로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어 : 전승 공동체, 무형문화재, 전통 공예기술, 전통적 공예품, 전통 공예산업

## 머리말

전통 직물공예는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환경, 생활양식 속에서 발전하여 전승되어 왔다. 대개 원료의 산지나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지역적 대표성을 얻은 경우가 많다. 충남 서천의 한산모시나 본 글의 대상인 일본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小千谷縮·越後上布)는 그러한 대표사례에 해당된다.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는 그 명칭이 지역 명에서 유래했다. 오지야는 현재 니가타현(新潟県) 오지야시이고 에치고는 니가타현의 옛지명이다. 따라서 에치고가 지역적으로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오지야는 오지야 지구를 에치고는 무이카(六日)와 시오자와(塩沢) 지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들 지역을 통틀어 우오누마(魚沼) 지역이라고도 부른다.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의 특징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토가 반영된 제작공정이다. 우오누마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이러한 자연조건이 이 지역에서 고급 마직물이 생산되는 배경이 되었다.<sup>01</sup> 우선 눈의 습기가 원료인 저마(苧麻)의 섬유에 적당한 습도를 제공하고, 눈 위의 별이 표백의 효과가 있다. 또한 겨울에는 눈에 갇혀 생활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집중적인 작업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문화의 특징을 살리면서 옛 방식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는 현재 일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지야치지미는 전통적 공예품으로도 지정되어 있다.<sup>02</sup>

본 글에서는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의 사례를 통

해서 전통 직물공예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당 유산의 전승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인 전승자들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이들의 전승행위가 어떠한 보호조치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전승 공동체의 구성과 역할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의 전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체는 중요무형문화재 인정 보유단체인 '에치고조후·오지야치지미기술보존협회(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이다.<sup>03</sup> 그리고 이들 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의 직물조합인 '오지야직물동업협동조합(小千谷織物同業協同組合)'과 '시오자와직물공업협동조합(塩沢織物工業協同組合)'도 전승에 있어 중요한 공동체이다. 이들은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의 생산자에 해당하는데, 현재 보존협회 회원으로 있어 본 장에서는 보존협회를 중심으로 전승 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존협회는 1955년에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의 기술보존과 기술전승자에 대한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결성은 1950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맞춰 오지야치지미를 문화재로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틀을 갖추었다. 그것은 문화재 선정 준비를 담당할 조직을 만들면서 오지야치지미직물조합이 우오누마군 지역 안의 다른 조합을 포함하여 광역적인 조직을 만들었으며,<sup>04</sup> 그러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01 마직물은 삼베와 모시로 구분하여 칭하는데, 삼베는 대마(大麻)를 재료로 하고 모시는 저마(苧麻)를 재료로 짠 직물을 말한다. 이 지역 마직물 생산은 8세기의 것이 남아 있어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2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지역의 마직물을 개량한 것이다. 1800년 기행인 『적마록(績麻錄)』에 따르면, 1655~1672년경 아카시(明石)의 낭인이 오지야 부근에서 살게 되면서 고향에서 찢던 치지미를 짜게 되었는데, 이것이 평판을 얻게 되어 널리 퍼지면서 지역 특산물이 되었다. 치지미란 씨실을 강하게 꼬아서 주름을 만드는 것이고 조후는 평직의 것을 말한다. 이 둘은 씨실의 꼬임 말고는 주요 공정이 동일하다. 이들 마직물은 통기성이 좋고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촉감이 산뜻해서 여름에 어울리는 옷감으로 명성이 높았다. 전승지에서는 양자를 별개의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중요무형문화재와 전통적 공예품의 차이는 중요무형문화재는 저마를 손으로 지은 실을 사용하고 전통베틀인 거좌기에서 짠 직물이 해당되며, 전통적 공예품은 낱실과 씨실 모두 방적실인 라미실을 사용하고 개량베틀에서 짠 직물이 해당된다.

03 이하 '보존협회'라고 한다.

04 당시 오지야(小千谷) 지구는 라미실을 이용한 치지미에 역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우오누마 지역 내의 무이카(六日町)나 시오자와(塩沢)에 비해 전통베틀인 거좌기로 베를 짜는 사람이 적었다. 때문에 그 같은 상태가 지속될 시 전통 치지미 제작이 단절될 위기감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1995, 『重要無形文化財指定四十周年記念誌』, p.16, 참조).

조직이 ‘오지야치지미후기술보존협회(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이기 때문이다.

명칭만 보아서는 오지야치지미의 기술만을 보존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지야치지미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에치고쥬후의 기술을 보존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협회의 설립 목적에서도 오지야치지미후 및 에치고쥬후의 기술 보존을 명시하고 있어 처음부터 에치고쥬후가 기술보존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구성된 협회의 임원명부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 참여 임원 중 직물업 종사자의 활동지가 오지야, 시오자와, 그리고 무이카 등 우오누마의 3개 지구에 고루 해당되었다.<sup>05</sup> 이후 보존협회는 1964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1976년에 보유단체로 인정되었다.

보존협회의 회원으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회원도 있다. 앞서 언급한 오지야와 시오자와의 직물조합 두 곳이 여기에 해당한다.<sup>06</sup> 그리고 제작자, 제작관련 기술자, 원료관계자 등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된다.

보존협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오지야치지미·에치고쥬후의 기술보존과 전승이다. 이를 위해서 보존협회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57년 검사규칙을 시행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에치고치지미의 품질 유지와 기술 향상 및 관리를 도모하고, 그런 이유로 해당 제품의 명성을 높이고, 아울러 기술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sup>07</sup>

보존협회가 지향하는 이 같은 목표에 따라 회원들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품을 검사 받고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쥬후는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부터 예전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메이저시기 수입된 라미실을 사용한 제품을 구분하였다.



사진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기술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표시

이때 전통의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앞에 ‘본제(本製)’ 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업자와 제작자 사이에서는 본제 제품이 귀하게 취급되었다.<sup>08</sup>

여기서 보유단체 인정 이후 표기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요건은 바로 본제 제품이 되는 기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승 공동체의 행위는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지속 가능한 전승이면서 동시에 예전부터 귀하게 취급되던 본제 제품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 문화재 지정을 통한 유산의 보호 조치

이 장에서는 먼저 일본의 전통 공예기술에 관한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오지야치지미·에치고쥬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05 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1995, pp.6~7.

06 이들 직물조합과 보존협회의 관계에 대해 전승자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비유하여 말한다(2011. 6. 22, 보존협회 부회장 山岸良三 제보). 직물조합을 부모로, 보존협회를 자식으로 바라보는데, 이것은 문화재 선정을 위해 직물조합을 중심으로 보존협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07 이 규칙에서 말하는 에치고치지미(越後縮)란 날실과 씨실 모두 순수한 마를 손으로 자아 만든 실을 사용하여 전통베틀로 짠 오지야치지미 및 에치고쥬후를 말하며, 이를 ‘본제(本製) 치지미’ 라고 한다(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1995, p.38).

08 각주7) 참조

## 1. 전통 공예기술의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사회·경제적 혼란과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적 소산인 무형의 기예와 기술이 쇠퇴하게 되자,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무형문화재를 보호 대상으로 하였다. 무형문화재에는 예능·공예기술과 그 밖에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 해당되는데, 이중 공예기술에 대해서는 1954년, 1975년, 그리고 2004년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체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공예기술에 관한 무형문화재 보호조치로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문화재(記録作成等の措置を講ずべき無形文化財)', 그리고 문화재와는 다른 체계인 '선정보존기술'이 있다.<sup>9</sup>

1950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지정제도가 아닌 지원 대상을 문화재 보호위원회가 선정하는 방법만이 적용되었다.<sup>10</sup> 이때의 무형문화재를 '선정무형문화재(選定無形文化財)'라고 하는데, 특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국가의 보호가 없으면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고보조나 자재알선 등의 도움을 조치하도록 하였다. 공예기술은 선정무형문화재의 한 분야였으며, 세부적으로 염직기술<sup>11</sup>은 여러 공예기술 분야 중 하나였다.

공예기술에 있어서 1954년 법 개정의 중요 사항은 이전의 선정무형문화재 해제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保持者)로 인정하려 했는데, 그 기준은 해당 공예기술을 고도로 체득한 자, 또는 그것을 올바르게 체득·정통한 자이고 단체는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대신에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승해 오고 다수의 보유자를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의 대표자를 보유자로 인정하는 '총합인정(總合認定)' 방식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보유자 인정은 '총합인정'과 개인의 기술에 대해서 개인을 인정하는 '각개인정(各個認定)'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다. 이후 1975년 개정에서 총합인정이 보유단체 인정으로 변경되었다.<sup>12</sup>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으로서 보존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정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선정보존기술'이 신설되었다.<sup>13</sup>

공예기술 분야의 보유단체는 공예기술의 성격상 개인적인 특색이 약하며, 또한 해당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다수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것은 단일 공정이 아닌 복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공정마다 다수의 전승자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승자들이 속한 집단 자체를 무형문화재의 구현자로 보아 보유단체로 인정한 것이다.<sup>14</sup>

보유단체 인정에는 각개인정에는 없었던 지정요건이 표기되었다. 이는 지정된 공예기술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 기술의 공정이나 재료, 도구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이 해당되었다. 각개인정의 경우 예술성을 추구하는 보유자 개인의 성향이 반영되므로 그 재료나 공정, 문양 등의 사용에 있어서 어떤 의미 변화가 인정될 수 있지만, 보유단체의 경우는 예술성보다는 공예사적 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각각의 지정요건이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더욱이 공예기술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기술적 변화나 도구의 변화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요건을 제시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09 '선정보존기술'은 일본 문화청이 운영하는 일본 문화유산 포털 사이트에 소개된 문화재 체계에는 나와 있으나 문화재의 하위 범주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재료 제작, 수리, 수복의 기술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http://bunka.nii.ac.jp> 참조).

10 菊池理予, 2009, 「無形文化遺産としての工芸技術-染織分野を中心として」, 『無形文化遺産研究報告』 3,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 pp.41~42.

11 직물공예는 일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분야에서 공예기술 분야의 염직기술에 해당한다.

12 현재 보유단체는 공예기술 분야에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연구:일본·중국·중화민국」, p.20).

13 菊池理予, 2011, 「我が国における工芸技術保護の歴史と現状-染織技術を中心として」, 『無形文化遺産研究報告』 5,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 pp.1~3.

14 菊池理予, 2009, p.46.

15 菊池理予, 2009, pp.47~51. 참조

## 2.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와 무형문화재 보호 체계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는 1953년 선정무형문화재가 되어 보호 대상이 되었다.<sup>16</sup>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시기는 전쟁 이후 미국을 통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생활 양식이 빠르게 변화되어 전통 공예기술이 그 영향을 받던 때였다. 특히 의생활과 관련된 염직기술의 쇠퇴는 그 어느 종목보다 위기 상황에 있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는 선정무형문화재가 되었다.

이후, 1954년 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국가 지정제도가 확립되자, 선정무형문화재에서 해제되고 1955년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 염직분야로 변경 지정되었다.<sup>17</sup> 이 당시 보유자 인정은 앞서 언급 한 총합인정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총합인정 방식으로 결정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변경에 따른 보유자 인정문제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특정 기술을 소지한 개인을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염직기술의 특성 때문인데, 직물생산은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분업화되어 있으므로 특정 기술의 소지자를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보존협회는 중앙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결국 대표자가 인정을 받는 총합인정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1960년 삼실잇기와 베틀짜기, 가스리 만들기의 공정에서 대표자 2명씩을 보고하게 되었다.<sup>18</sup> 이

후 1975년 법 개정으로, 1976년에 보유단체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제작 공정 중에서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지정 요건이 정해졌다.

- (1) 전부 저마에서 손으로 짠 실을 사용할 것
- (2) 가스리를 만드는 경우는 손으로 흘치기를 한 것 일 것
- (3) 베틀(거좌기)로 짠 것 일 것
- (4) 주름을 만드는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삶기, 밟기에 의할 것
- (5) 표백은 눈 위에서 할 것

제시된 요건들은 직물제작에 있어서 주요 공정에 해당되지만, 원재료라 할 수 있는 저마의 채배에서부터 이를 정제한 태모시靑擘를 만드는 과정은 제외되어 있다.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는 주로 만들어진 태모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은 원재료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아 제품을 만드는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태모시는 후쿠시마현(福島県) 쇼와촌(昭和村)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sup>19</sup> 따라서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재료라 할 수 있는 태모시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점에서 앞서 언급한 선정보존기술은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의 전승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보호조치이다.<sup>20</sup> 쇼와촌의 '저마생산·태모시 만들기(からむ

16 이 당시 선정명칭은 '오지야치지미'이다. 1964년 보존협회는 '오지야치지미후기술보존협회'에서 '에치고조후·오지야치지미후기술보존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 무렵 무형문화재 지정명칭도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7 일본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 분야의 지정 기준은 ① 예술적으로 특히 가치가 높은 것 ② 공예사적으로 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 ③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고 또는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또한 지방적인 특색이 현저한 것 이상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현재 공예기술에만 57종의 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염직분야가 22종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수가 지정되었다. 이는 염직공예 특유의 수공예적인 기술 때문이며, 그 직종과 공정도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http://www.bunka.go.jp>)를 참고하기 바란다.

18 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1995, pp.7~8.

19 스즈키보쿠시의 『북월설보(北越雪譜)』에는 아이즈·모가미(지금의 후쿠시마현), 요네자와(아미가타현)의 모시가 질이 좋으면서, 이 지역의 모시를 재료로 이와 관계된 모시 상인들의 활약이 기술되어 있다. 현재 사용하는 모시의 생산지인 후쿠시마현 쇼와촌은 예전 아이즈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원재료를 가지고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라는 상품을 만드는 체계가 『북월설보』가 간행된 1837년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1995, p.25, 참조). 아이즈에서 모시가 채배된 것은 1598년 우에스기(上杉) 가문이 이곳으로 영지를 옮기면서부터이다. 그 뒤 아이즈에서는 양질의 모시가 생산되어 이로 인해 에치고 지역의 모시가 쇠퇴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모시는 우에스기 공을 따라서 아이즈로 갔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앞의 책, p.14.).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이즈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로 추정된다. 더욱이 17세기 후반 들어 등장한 치지미로 인해 모시 수요가 급증했으므로 부족한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양질의 모시를 생산하던 아이즈의 모시를 공급원으로 제품 생산 체계가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 선정보존기술에는 주로 원재료량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해당된다. 무형문화재 중에는 이러한 공정을 포함한 것도 있지만,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처럼 양자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선정보존기술과 무형문화재는 호응관계가 있다고 하겠다(菊池理予, 2011, p.7.).

し(苧麻)生産・苧引き)<sup>21</sup>가 1991년 선정보존기술로 선정된 이래, 쇼와촌에서는 전시설을 지어 전승시설을 갖추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양질의 저마생산과 공급을 목표로 전승자 육성과 기술전승을 하고 있다.

원재료에서부터 직물까지의 전체 공정에서 살펴보면, 선정보존기술로 있는 쇼와촌의 저마재배와 태모시 만들기는 원재료를 만드는 기술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후의 원사 재료에서 실을 만드는 기술과 실에서 직물을 짜는 기술이 중요무형문화재 오지야치지미·에치고쵸후의 기술로 전승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오지야치지미·에치고쵸후의 전승이 지속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원재료의 확보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구축되었던 타 지역의 원재료를 바탕으로 한 생산체계를 지속시키는 장치로써 오지야치지미·에치고쵸후의 전승 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sup>23</sup>

지금까지 살펴본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안에서 오지야치지미·에치고쵸후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오지야치지미·에치고쵸후는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 선정무형문화재에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보유단체 인정에 따른 5가지

지정요건의 준수를 통해 유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더욱이 원재료 확보에 대한 문제는 선정보존기술이 보호조치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타 지역의 원재료를 바탕으로 한 생산체계를 유지시켜나가고 있다.

## 전통 공예산업적 측면의 보호조치

오지야치지미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기 이전에 이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오던 대표적인 전통 공예산업이었다. 비록 예전처럼 지역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관련 중소기업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산업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로서의 보호조치가 「문화재보호법」이라면, 전통 공예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로 주목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伝統的工芸品産業の振興に關する法律)」이다.<sup>24</sup> 생활양식의 변화와 새로운 원재료 개발 등으로 일본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생활양식 속에서 전승되어온 생활용품이 어려운

표 1 오지야치지미·에치고쵸후의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명칭	문화재보호법		
	1950년 제정	1954년 개정	1975년 개정
오지야치지미·에치고쵸후 (小千谷縮·越後上布)	선정무형문화재 1953	중요무형문화재 (총합인정) 1955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 1976
저마생산·태모시 만들기 からむし(苧麻)生産・苧引き			선정보존기술 (보유단체인정) 1991

21 '苧引き'는 7월 중순, 2m 이상으로 자란 모시를 1개씩 낮으로 베어내어 잎을 떼어 내고 길이를 맞춘다음, 속대로부터 겹질을 손으로 벗겨내고, 겹질에서 1매씩 섬유를 추려내는 공정이다. 이과정은 모시를 베어내어 태모시를 만드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태모시 만들기'로 번역하였다.

22 菊池理予, 2011, p.7.

23 에치고쵸후·오지야치지미후기술보존협회에서는 원재료의 부족에 따른 문제를 1970년대 초부터 느끼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저마 대책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처럼 원재료인 저마의 부족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우오누마 지역의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어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쇼와촌이 자체적인 직물 생산 계획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록 치지미나 쵸후와 같은 양질의 마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으나 굵은 실에 의한 직물 생산을 통해 일정 정도의 소비량을 확보하게 되자, 우오누마 지역에서는 저마의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오지야를 비롯한 우오누마 지역에서는 원마 대책의 자급자족 계획을 세우고 모시 재배를 하였으나 이 지역에서는 삼겹질 벗기는 기술 부족, 적당한 토지 선정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1995, pp.26~27. 참조).

24 이하 '전산법'이라 한다.

시기를 맞이하자 전통적 공예품 산업을 진흥시켜 미래에도 이를 전승하고자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sup>25</sup>

비록 당시에는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 전통 공예기술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술적·공예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전통 공예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발전해 온 전통 공예품의 보호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는 문화재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생활용품의 공급을 맡고 있는 전통 공예산업의 진흥 대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sup>26</sup>

여기서 전통적 공예품 산업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산법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산법에서는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 등을 사용해서 제조되는 전통적 공예품이 민중의 생활 속에서 발전 계승되어 온 것 또한 미래에도 그것이 계속 존재할 기반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풍요와 윤택함을 줌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sup>27</sup> 이를 통해서 전통적 공예품 산업은 일본의 전통적 기술 또는 기법을 전승하는 것과 함께 일본 국민의 생활에 풍부함과 윤택함을 주는 산업이라 하겠다.

전산법에서는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전통적 공예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산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통적 공예품산업진흥협회(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會)<sup>28</sup>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sup>29</sup> 여기서 전통적 공예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sup>30</sup>

- (1) 주로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 것
- (2) 그 제조 과정의 주요 부분이 수공업적일 것
- (3)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에 의해 제조된 것일 것
- (4)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재료가 주된 원재료로 이용되어 제조된 것일 것
- (5) 일정한 지역에서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그 제조를 하고, 또는 그 제조에 종사하고 있을 것

상기 요건에서 (1)은 숙련된 기술에 의해 제작되고 예술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일반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예품을 말한다. 예술적인 요소가 있으나 일상생활과의 관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미적 표현을 제일로 여기는 예술작품과는 다르다. (2)는 공예품이 지닌 개성에 영향을 주는 형태나 문양, 양식, 질감 등의 가공이 앞선 세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수작업에 의한 것을 말한다. (3)에서 전통적이라는 것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의 주요 기술과 기법이 최소 100년 이상 되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4)에서 말하는 주요 원재료는 최소 100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환경적으로 친숙한 자연소재여야 한다. (5)는 제조된 공예품이 일정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 산업으로 성립되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산지의 형성을 말함인데, 최소 10개 기업 또는 30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나 풍토와 같은 지역적인 특성을 갖춘 지역 특산품으로서

25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會, 2006, 『經濟産業大臣指定 伝統的工芸品』, p.4.

26 深津裕子, 2010, 『染織技術の記録・保護への取り組み-製織・製絲・縫製を中心に』 『無形文化遺産研究報告』 4, 獨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 p.58.

27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伝統的工芸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제1조.

28 이하 ‘진흥협회’라고 한다. 진흥협회는 경제산업대신 지정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산지조합의 지원으로 1975년 설립되었다(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會, 2006, p.4.).

29 보조금 지원에는 ‘전통적 공예품 산업 지원보조금’과 ‘전통적 공예품 산업 진흥보조금’이 있다. 전자는 산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개개의 지정된 산지와 산지 간의 연대에 의한 전시회 개최 등의 수요개척사업, 원재료 확보, 기술·기법의 계승사업, 후계자의 육성사업, 신상품 개발사업 등을 보조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 실시하는 인재육성, 산지지도, 보급추진, 수요개척의 각 사업을 보조하는 것이다. 주로 진흥협회가 하고 있는 사업 지원을 통해서 개별 산지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전국 무역업자나 소비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 홍보를 통한 신규 수요개척 등에 공헌한다. 최근에는 일본 동북부 지역의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피해산지로의 적극적인 지원을 새로이 추가하였다(http://www.meti.go.jp/main/yosangaisan/2012/pr/pdf/shoijo\_02.pdf).

30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알려져 있어야 한다.<sup>31</sup>

위에서 열거된 요건들을 충족시킨 전통적 공예품은 현재 211개 품목이 있다.<sup>32</sup> 이것들은 일본의 전통 공예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선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 공예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법에 의해서 그것이 전통적 공예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sup>33</sup>

전산법은 전통 공예기술 또는 그 기법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언뜻 문화재보호법과 유사한 듯도 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전통 기술을 중요시했다면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그러한 전통 기술이나 기법을 이용하여 공예품을 제조하는 산지를 중요시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산법의 목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지야치지미는 1975년 전통적 공예품에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산법에 의한 각종 지원 대상이 되었다. 산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지원 말고도 전통적 공예품 표시의 부착을 통한 제품의 신뢰도 확보와 잠재적인 수요층 육성, 전승자의 양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지야치지미는 전통적 공예품의 표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검사하여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해 전

통적 공예품의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부착된 표시는 진흥협회가 엄중한 감시 및 시정 지도를 통해 부정 표시의 방지에 노력하는 등 전통적 공예품 표시의 보전을 철저히 하므로 제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또한, 전국전통적공예품센터에 오지야치지미의 제품이 상설 전시됨으로써 제품에 대한 일반인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진흥협회가 실시하는 기모노입기 교실과 같은 정기적인 행사는 젊은 세대에게 기모노의 재인식과 애착을 촉진시켜 수요층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 전통적 공예품의 기술 또는 기법을 전승하기 위한 숙련 종사자 인정사업으로 실시되는 '전통 공예사' 인정제도를 통해서 오지야치지미의 숙련된 전승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sup>34</sup>

다시 말해서 오지야치지미는 전산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통 공예품 산업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의 '전통적'이라는 지정요건의 준수를 통해서 현대화된 산업제품이 아닌 전통적 공예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공예사적인 가치를 존속 시키고 있다.

## 맺음말

전통 직물공예는 소재한 지역의 역사와 환경,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전승되어 왔다.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지역적 대표성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산업으로서 기능해 왔다. 비록 지금에 와서는 과거처럼 산업적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관련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해당 공예품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사진 2 전통적 공예품 표시

31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會, 2006, p.4;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會, 2009, 『日本の伝統的工芸品』, p.3.

32 211개의 품목 중에서 직물공예는 33개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직물공예가 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며, 오지야치지미·에치고조후와 관련해서는 오지야치지미를 포함하여 4개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33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34 전산법 제24조에 근거한다. 응시자의 자격은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된 숙련 기술자이며, 실기시험 등에 합격하면 진흥협회가 전통 공예사로 인정한다.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2466/006\\_06\\_00.pdf](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2466/006_06_00.pdf)).



그러나 이 같은 전통 직물공예의 전승은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등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보호조치가 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통'에 대한 보전으로, 이는 전통 직물공예를 만드는 제작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문화재 지정은 급속히 변화되는 전통 직물공예의 환경 변화에 있어서 해당 기술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보호조치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그렇지만 전통 직물공예는 문화재이기 이전에 지역산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왔다. 이 같은 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호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예기술의 특성상

제조기술과 재료, 도구의 발달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맞춰 '전통'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예기술 중에서 직물공예는 한산모시짜기를 비롯한 4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으며, 지방무형문화재로는 5종목이 지정되어 있다.<sup>35</sup> 그렇지만 이들 종목들은 개인지정으로 분류되어 특정인의 기술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공정 과정이 다수의 종사자들에 의해 분업화되는 직물공예의 특성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점에서 본 글에서 살펴 본 오지야치지미·에치고쥬후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전통 공예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산지에 대한 보호를 통해 지역의 전통 산업으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은 우리의 전통 직물공예가 처한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35 중요무형문화재는 한산모시짜기(제14호), 나주의 셋골나이(제28호), 곡성의 돌실나이(제32호), 명주짜기(제87호)가 있으며, 지방 무형문화재는 한산세모시짜기(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청양 촌포짜기(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 안동포짜기(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무명짜기(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청도삼베짜기(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4호)가 있다.

## 참고 문헌

- 越後上布小千谷縮布技術保存協會, 1995, 『重要無形文化財指定四十周年記念誌』
-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會, 2006, 『經濟産業大臣指定伝統的工芸品』
- 伝統的工芸品産業振興協會, 2009, 『日本の伝統的工芸品』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국외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연구:일본·중국·중화민국』
- 菊池理子, 2009, 「無形文化遺産としての工芸技術-染織分野を中心として」 『無形文化遺産研究報告』 3,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
- 深津裕子, 2010, 「染織技術の記録・保護への取り組み-製織・製糸・縫製を中心に」 『無形文化遺産研究報告』 4,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
- 菊池理子, 2011, 「我が国における工芸技術保護の歴史と現状-染織技術を中心として」 『無形文化遺産研究報告』 5,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
- 일본 문화청 <http://www.bunka.go.jp>
-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4, December 2012, pp.104~113  
Copyright©2012,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Traditional Weaving Crafts through the Case of Ojiya-Chijimi and Echigo-Jofu in Japan

Lee, Chae 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ceived : 2012. 09. 28 · Revised : 2012. 11. 01 · Accepted : 2012. 11. 15

## ABSTRACT

Traditional weaving crafts has the history, environment and lifestyle of country where the country is located. Thus it has been an regional industry because it has the representation of country due to a long history. However it has faced a threat which comes from lifestyle changes.

Therefore a law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weaving crafts was established and took action to protect weaving crafts. It was played importantly as protection system on weaving crafts. But traditional weaving crafts was a regional industry from long time ago, accordingly we need to think as not only cultural heritage but also crafts industry.

This study will demonstrate how sustainable as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crafts industry with case of Ojiya-chijimi and Echigo-jofu (Japanese traditional weaving crafts).

**Key Words** Commun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Craftsmanship, Traditional Crafts, Traditional Crafts Industry